

선	기관외 장
람	

시 G 보

제37호(호외) 2022. 10. 4.(화)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1893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광 양 시 장

1. 규 정 명 :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법 시행을 위한 절차, 방법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 우리 시 지속 가능한 발전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요건(안 제2조~제3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및 조례 제·개정, 행정계획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추진상황 점검, 검토 결과 통보 절차(안 제4조~제5조)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보급 및 평가에 대한 검토·통보 절차
(안 제6조~제7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포함사항(안 제8조)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직무, 운영 등 명시(안 제9조~제1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1일까지 광양시장(참조: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기획예산실(우 57785)
- 전 화: 061-797-2211
- 팩 스: 061-797-2574(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kimmd@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기획예산실(전화:071-797-2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광양시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광양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지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검토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지방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광양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

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양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광양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양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광양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광양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광양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지방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지방위원회에 지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수당) 시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